

#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시험 수당지급 및 여비 지급기준(안 제2조~제3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 
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에 따라, 하남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